

제224회 임시회
광진구의회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9. 3. 1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제 1505호
----------	---------

2019. 3. 14.
복지건설위원회

1. 제안자 : 광진구청장

2. 제안이유

- 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중곡종합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6월 30일자로 만료 예정으로,
-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최초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매 4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중곡종합사회복지관 8차 민간위탁에 대해 광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 현황

시설명	시설장	주소	관할구역	현) 운영체 및 위탁기간	
				위탁법인	위탁기간(7회차)
중곡종합 사회복지관	한은경	용마산로3길 62 (중곡동134-18)	중곡1~4동 능동, 군자동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2016.7.1.~ 2019.6.30.

※ 1998. 11. 23 ~ 2016. 6. 30 : 재단법인 예수성심시녀회(1회차~6회차)

나. 위탁기간 : 2019. 7. 1. ~ 2024. 6. 30.(5년) 【8회차】

다. 추진 필요성

-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운영 가능
- 법인 전입금, 후원금(품) 등 민간 외부자원 활용 용이

라. 주요업무

-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지도
-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복리후생사업 및 정서지원 서비스 실시
- 지역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사업
- 기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마.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9명이내) : 4월 중
- 수탁자 선정 심의 : 2019. 5. 10.(금) 14:00 예정
- 위·수탁 계약 체결 : 2019년 6월 중

3. 위탁 심사 방법 및 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공통기준 준용
- 공통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총점 100점
 - 법인의 공신력(40점), 재정능력(20점), 사업능력(40점)
-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70점 이상 득점으로 적격여부 결정
 - 심사위원회 개별 위원의 점수가 선정 결과를 왜곡하는 오류 방지를 위하여 최고 및 최저점수 제외

4. 소요예산

- 2019년 운영보조금 현황(시비 869,956천원, 구비 96,046천원) (단위:천원)

시설명	총 계	기본 운영비 (시90:구10)	종사자 인건비 (시90:구10)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시비100%)	종사자 복지포인트 (시비100%)
중곡종합사회복지관	966,002	102,000	858,462	1,080	4,460

5. 관련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 계약 체결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4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임문섭)

- 의안번호 제1505호 본 동의안은 2019년 2월 25일 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이 제안하여 2019년 3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중곡종합사회복지관”은 재단법인 예수성심시녀회를 수탁기관으로 하여 6차(1998.11.23 ~ 2016.6.30)에 걸쳐 민간 위탁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7차 민간위탁 시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로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으며, 올해 6월 30일 7차 위탁기간(3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임.
 - “중곡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¹⁾에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운영의 위탁)²⁾를 통해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 조례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1) 제2조(시설의 명칭 및 관장) 광진구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및 관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장종합사회복지관
2. 자양종합사회복지관
3. 중곡종합사회복지관<신설 1998.01.17>
 - 가. 지역내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자료
 - 나.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직업훈련과 지도
 - 다. 무료예식장, 독서실, 노인교실, 어린이 집 등 운영
 - 라. 기타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4조(운영의 위탁)

- ①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현재 7차 위탁기간 만료 이후 8차 위탁(재계약)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매 4년차마다 신규위탁과 마찬가지로 구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2018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금번 8차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재위탁” 과 “재계약” 의 구별

- 재위탁 :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법인과의 위탁기간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법인과 다시 계약

- 본 동의안의 근거 조례인 2018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0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는 향후 계속되는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에도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됨.
 - 먼저, 제6조의 구의회 역할과 제10조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탁기관의 선정 및 평가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여부 자체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여부는 구의회의 역할임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래 구의회의 동의는 “수탁기관” 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무”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 안건에 관련지어 표현하면 구청장이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을 계약 만료 시를 기준으로 직영을 고려하지 않고 다시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사무에 대해 위탁한 차수가 8차인 관계로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임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2018년도 내부 법률자문 주요사례』 (2019. 2. 19. 기획예산과)

“해당 **사무가 민간위탁** 대상으로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동일 수탁자에 대한 **재계약**에 대하여는 조례 제14조 및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심의결과를 토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4쪽)

○ 종합 검토의견으로

- 본 동의안은 1998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가 2019년 6월 30일 7차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8차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구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으로
- 중곡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사무의 성격상 현재와 마찬가지로 특수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무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 행정능률 향상 및 지역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사무와 수탁기관의 선정 등을 심의하는 데 있어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매년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보조금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019) 1부. 끝.

2019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발췌)

I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1조(지도·감독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수탁자 선정) 제8조(지도·감독 등)

II 운영 개요

1 기본방향

- 수탁자 공개모집 원칙 강화를 통한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 동일 법인의 반복 재계약 관행에 따른 시설 사유화 및 안일한 운영 개선
- 시설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 시설종사자 승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
- 부적격 법인에 대한 퇴출 조치 강화
 -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등의 중대 위법 법인에 대한 위탁 제한(계약해지)

2 적용 대상

- 시립사회복지시설 중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에 규정된 시설
- 신규위탁·재위탁·재계약의 경우에 적용

- 신규위탁 : 시립사회복지시설 설립 후 최초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또는 직영하던 시설을 최초로 민간위탁하는 경우
- 재위탁 :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법인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법인과 다시 계약

③ 위탁계약기간 : 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근거 위탁계약기간 5년으로 함

④ 수탁자선정 시기

- 신규위탁: 개관 6개월 전
 - 신규시설의 경우 필요시 설계 단계에서 수탁자 선정 가능
- 재위탁·재계약: 계약만료 3개월 전
 - 계약기간 중 위·수탁 해지 할 경우 6월 전 까지 문서 통보하여야 함

⑤ 모집방식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위탁관련 절차 및 방법을 공개

⑥ 신청법인 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
 - 시설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 시도 소재지 법인도 가능

⑦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조례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세부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할 것
 - 위원이 위탁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⑧ 심사원칙(생략)

⑨ 선정방법(생략)

⑩ 수탁자 선정결과 게시(생략)

11 추진절차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신규위탁·재위탁·재계약) 절차

구 분	신규위탁(공개모집)	재위탁(공개모집)	재계약
사전조사 (주관부서)	위탁운영 필요성 및 기대효과, 운영사례, 수탁가능법인 등 사전 조사	위탁운영 지속필요성, 공개경쟁 가능성, 수탁가능법인, 재계약 가능 여부 등 사전 조사	
↓	↓	↓	
추진계획 (주관부서)	위탁사무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위탁사무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	↓	↓	
민간위탁 적정여부심의 (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심의		
수탁자 선정 (주관부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 수탁자 적정성 심의 ※심의결과 '부적격' 판정 시 수탁자 공개모집 절차 이행
↓	↓	↓	
의회동의/보고 (주관부서)	시 의 회 동 의	소 관 상 임 위 보 고	
↓	↓	↓	
예산편성 (주관부서)	시 의 회 의 결		
↓	↓	↓	↓
수탁자 선정 (주관부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 수탁자 공개모집 ▶ 수탁자 적정성 심의		
↓	↓	↓	↓
비용심사 등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비용 심사 (계약심사과)	협약서 심사 (법률지원담당관)
↓		↓	
협약체결 (주관부서)		위·수탁 협약 체결	
↓		↓	
사후관리 (주관부서)		지도점검, 평가 등 사후관리	